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인
용조문 및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및 공익신고 우수기업 선정조항 신설
- 환경조성사업 :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
 - 공익신고 우수기업 : 공익신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사규 등
에 도입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기업
- 나.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함
- 이전 조례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함
-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기업지원과, 세정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12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해당 안건의 심의·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장의 제목 “보칙”을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우수기업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을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보아 동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②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7조(종전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구할 수 있다”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제27조(종전의 제23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4장제26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7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u>“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사업을 말한다.</u>
제12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구미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2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설치) ----- ----- ----- ----- ----- ---- 둔다. 단, 해당 안전의 심의·결정 후 자동해산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13조(위원회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u>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5. · 6. (생 략)

제4장 보칙

<신 설>

<신 설>

6. · 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등

제23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
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
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
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
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
책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24조(우수기업 우대 및 지원)

① 시장은 우수기업을 「구미시

<신 설>

<신 설>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
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방재
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보
아 동 조례 제5조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
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
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
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
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
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
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
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
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
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
고 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환
경조성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

제23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역 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신 설>

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

②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7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 강
구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u><신 설></u> <u>제24조</u> · <u>제25조</u> (생 략) <u>제26조</u> (생 략) <u><신 설></u>	<u>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u> <u>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u> <u>개최 등</u> <u>제28조</u> · <u>제29조</u> (현행 제24조 및 제25조와 같음) <u>제30조</u> (현행 제26조와 같음) <u>제5장 보칙</u>
---	--

관계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시행일 2018.5.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31] [[시행일 2018.5.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시행일 2016.1.25]]
-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시행일 2016.1.25]]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22]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3조의2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본조신설 2016.1.22.]

제5조 (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 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10.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 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5조(지원 등)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4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 지급
2. 제3조제3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시 납세담보 완화

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라.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모범 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

마. 시 주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구미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26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재정지원규모는 향후 해당안건 발생 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할 수 있어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서기 안정혁 (054-480-6074)

소관 실 · 과		감사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손 귀 성
	담 당	최 화 식
	담 당 자	안 정 혁 (480-6074)